

『2013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14년 6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의안으로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음.

1. 제안이유

-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은 2,078,284천원으로 이중 12건에 1,107,51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 예비비 지출내역은

(단위:천원)

사 업 명	지출액	예비비 지출사유	비 고
12건	1,107,518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	3,675	축사급수시설의 동파방지 장비 지원을 통해 겨울철 한파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	농업기술센터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175,533	1.22~22일 폭설에 따른 제설 장비 임차료	안전건설과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56,439	2.3~2.6일 폭설에 따른 제설 장비 임차료	안전건설과
대설피해 민간인 보상금	19,050	2.14일 대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	농업기술센터
대설피해 민간인 보상금	91,125	1.21일 대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	농업기술센터

사업명	지출액	예비비 지출사유	비고
대설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24,500	2.3일 대설피해 농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농업기술센터
원길1교 수해피해에 따른 가교설치	275,877	7.11~7.15일 집중호우시 원길1교 수해피해에 따른 가교설치	안전건설과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44,132	7.11~7.15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안전건설과
집중호우 민간인 재해보상금	73,787	7.11~7.15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재난지원금	안전건설과
풍수해보험 추가지원 확대에 따른 보험금	40,000	풍수해보험 추가지원 범위확대에 따른 수요증가	안전건설과
강풍피해 재해보상금	600	7.2일 강풍피해 농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농업기술센터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상환	2,800	안전행정부 고금리 지방채 차환 계획 지역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 부족	기획감사실

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지방자치법』 제12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의 차후 승인은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해제를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예비비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편성 토록 되어 있어
 - 2013년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 2,346억중 28억으로 1.2%를
 - 2014년도는 2,519억중 35억 1.4%가 편성되어 예비비 확보 기준을 충족하였음
- 2013년도 예비비집행은 12건에 11억이 지출되었으며 모두가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폭설에 따른 제설 장비 임차료”는 우리군의 기후특성상 최소한의 폭설예측이 가능 하므로 예비비를 매년 사용하기 보다는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임.